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5. 27.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7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 5. 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1. 제안이유

행정심판·행정처분과 도정 주요정책 결정 시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정배심원단 심의 대상(안 제3조)

-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결정, 도정 주요 시책·사업 결정
- 행정심판, 행정처분

나. 도정배심원단 운영 및 의견 반영(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만19세 이상인 자로 500여명 규모의 도정예비배심원 위촉
- 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5~30명) 및 의견 반영

다. 심의결과 보안(안 제9조)

- 도정배심원단의 심의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 도정배심원단 심의결과 공개 원칙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도정배심원제는 주민참여형 행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주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도가 1)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제도라 하겠음.

특히, 공공요금(버스·택시요금 등)의 결정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 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결정과 행정심판 및

0) 경북도가 행정처분에 한해 도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으나, 공공요금의 결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도정 주요사업·시책 결정과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등 도정 전반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음.

행정처분 등 도정 전반에 폭넓게 도입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정의 신뢰성 및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갈등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 운영부서의 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 개념이 포함된 조문의 경우

○ 안 제3조 제3항(도정배심원제 적용 예외)의 제2호

- “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정 검토안>

⇒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나. 운영부서의 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경우

○ 안 제6조 제1항(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

- “도정배심원단 운영은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수정 검토안>

⇒ “도정배심원단 운영은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다. 기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붙임 자구 수정안 대비표 참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문제점(자의적 해석 가능, 운영부서의 장의 과도한 재량 등)에 대해 토론 후 이를 수정하기로 함.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조례안 중 자의적 해석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도정배심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함

(안 제3조제3항제2호).

- 도정배심원단 심의 제외대상 중 “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로 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앴.

나. 운영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6조제1항).

- 도정배심원단 구성 권한을 운영부서의 장에서 도지사로 함(안 제5조제1항).
- 도정배심원단의 운영방법에 있어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기타 자구 수정(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안 제4조의 제목 “(도정예비배심원단 선정 등)”을 “(도정예비배심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시군별 인구비례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운영부서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도정배심원단”을 “사안별로 도정배심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정배심원단”을 “도정배심원단의 구성”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집합심의”를 “출석심의”로 하고,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은 “의견결정”으로 하고,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위원회”를 “당해 업무관련 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를 “이를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도정배심원단의 심의 대상) ③ (생략) 1. (생략) 2. <u>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u> 3~5. (생략)</p> <p>제4조(도정예비배심원단 선정 등) ① <u>도정예비배심원단은 충청북도에</u> 500여명 규모로 위촉하되, 시군별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p> <p>제5조(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 ① <u>운영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u> <u>도정배심원단을</u> ② <u>도정배심원단은 사안의 경중 등을</u> </p>	<p>제3조(도정배심원단의 심의 대상) ③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u>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u> 3~5. (원안과 같음)</p> <p>제4조(도정예비배심원 선정) ① <u>도지사는 충청북도에</u>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한다.</p> <p>제5조(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 ① <u>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u> <u>사안별로 도정배심원단을</u> ② <u>도정배심원단의 구성은 사안의 경중 등을</u>.....</p>

원 안	수 정 안
<p>제6조(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 ① 도정 배심원단 운영은 <u>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u>도정배심원단 의견은</u> <u>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제7조(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p> <p>① 운영부서의 장은 <u>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에게</u></p> <p>② <u>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u><u>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6조(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 ① 도정 배심원단 운영은 <u>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u>도정배심원단의 의견결정은</u> <u>정한다.</u></p> <p>제7조(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p> <p>① 운영부서의 장은 <u>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 결정권자에게</u></p> <p>② <u>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u><u>이를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u></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도정배심원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정예비배심원단”이란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주요정책 결정 및 처분 등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도민들을 말한다.
2. “도정배심원단”이란 도정예비배심원단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도민들을 말한다.
3. “도정배심원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란 도정배심원제 시행 대상 업무인 행정심판, 행정처분, 주요정책결정 사무를 처리하는 충청북도 소관 실·과·팀을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정배심원단 심의 대상) ① 도정배심원단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 결정의 경우
2. 도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의 경우
3. 행정심판 사건 중 청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사전 예고 시 처분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청구자 또는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도정배심원제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3. 행정심판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4.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5. 그 밖에 도정배심원제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4조(도정예비배심원 선정)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시군별 인구비례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한다.

② 도정예비배심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는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자 또는 행정처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정배심원단의 구성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6조(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 ① 도정배심원단 운영은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도정배심원단의 대표는 도정배심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는 도정배심원단 회의를 주재한다.

③ 도정배심원단의 의견결정은 출석 배심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7조(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 ① 운영부서의 장은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서를 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도정배심원의 제척) 도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

제9조(심의결과 보안 등) ① 도정배심원은 심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7조의 도정배심원단 심의·운영 결과를 도정배심원제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5조에 의거 심의에 참여한 도정배심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법】

第777條 (親族의 범위) 親族關係로 인한 法律上 效力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에 미친다.

1. 8寸이내의 血族
2. 4寸이내의 姻戚
3. 配偶者